

능력주의의 문제와 법의 역할*

- 불프강 후버의 법윤리의 적용

김성수 (명지전문대학, 초빙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능력주의의 개념과 문제
- III. 능력주의와 법
 - 1. 법의 목적과 기능
 - 2.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 IV. 능력주의와 법윤리적 과제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3.01>

* 본 논문은 2022년 4월 30일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The Problem of Meritocracy and the Role of Law: An Application of
Wolfgang Huber's Legal Ethics

Invited Prof., Kim, Sungsoo (Myongji College)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roblem of meritocracy and to show a way to overcome it, which can be discovered in Wolfgang Huber's legal ethics. In the meritocratic structure, where distribution by merit is important,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individual is disregarded. Therefore, 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 is necessary to mitigate the effects of poor starting conditions. The law contributes to its realization. Huber explains the purpose and function of law and emphasizes the need for theological reflection. He further argues that education promotes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equality of opportunity. On this basis, the church must endeavor to implement the right to development. This legal-ethical effort contributes to overcoming the meritocracy problem and the development of society.

Key words: Wolfgang Huber, Legal Ethics, Meritocracy, Justice, Social Ethics, Right to Development

I. 들어가는 말

성서에 등장하는 베테스다 연못(요 5:2-9)은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던 장소였다. 천사에 의해 성스러워진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소문 때문에 이 연못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선착순이 규칙이었고, 속도와 민첩성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었다. 38년 동안 질병을 앓고 있던 한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도태된 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었다.

이 이야기 속에 묘사된 경쟁 상황은 현대 사회에서 유사하게 재연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이 일상화되고, 평범해진 사회의 양상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심화하여 심각한 병목 현상(bottleneck)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¹⁾ 비좁은 지점을 통과하여 선망하는 대상을 획득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쟁 사회에서 선택의 기준은 능력이다. 사안에 적합한 특정 능력을 갖춘 사람이 그에 부합한 보상을 얻는 것이다. 이 인식이 집약된 능력주의는 경쟁 사회의 핵심 원리이다. 이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원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능력 형성에 미치는 배경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경의 혜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능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방치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된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의 개입이 필요하다. 교회도 법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관심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머물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회는 능력

1) Fishkin, Joseph,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유강은 역, 『병목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2016), 12.

의 배경적 요인이 간과되는 구조 속에서 그 결핍에 의한 능력 부족으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시하고, 그 극복을 위해 법에 대한 윤리적 성찰에 주력해야 한다. 독일 신학자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의 기획은 이 과제의 수행에 공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개신교 법윤리를 선구적으로 주제화하고, 체계화한 그는 교회가 법윤리적 책임의 근거를 설정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인 법의 목적과 기능을 주제화하고,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규정하였다.²⁾ 또한 그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후버의 구상은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후버의 법윤리를 기초로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능력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근본 문제를 명료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제 극복을 위한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 후버가 이해한 법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고, 그가 시도한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법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에 관한 후버의 구상을 토대로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스승인 하인츠 에두아르트 퇴트(Heinz Eduard Tödt)와 함께 1970년대부터 인권 개념을 바탕으로 법을 탐구 주제로 삼았던 후버는 심층적 연구를 통해 법윤리의 이론적 틀을 정립하고, 많은 후속 연구를 촉발하였다. Huber, Wolfgang und Tödt, Heinz Eduard,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München: Kreuz Verlag, 1977), 후버의 법윤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다음을 참고하라. Moxter, Michael, "Recht und kommunikative Freiheit. Überlegungen zur Rechtsethik Wolfgang Hubers," in *Kommunikative Freiheit. Interdisziplinäre Diskurse mit Wolfgang Hub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4), 109-125.

II. 능력주의의 개념과 문제

능력주의(meritocracy)는 능력에 부합하는 보상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고 체계를 말한다. 능력(merit)은 선천적 재능과 후천적 노력이 결합된 총체적 개념이다. 능력주의가 활성화된 사회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존중하고, 그 보장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Michael Young)에 의해 처음 이뤄졌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개념의 근본 사고가 존재해왔고, 근대에 이르러 그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³⁾ 특히 개인의 재능과 노력 정도에 따라 자격, 지위, 재화를 할당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와 양립한다고 여겨졌다. 능력주의는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과 결부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발전을 추동하였고, 가문과 혈통에 의한 권력 세습을 비판하며, 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정치와 행정을 맡아야 한다는 사고로 확장되기도 하였다.⁴⁾

이 과정에서 능력주의는 정의 이념과 결합되어 이해되었다. 능력에 따른 보상이 각자에게 응분의 몫(suum cuique)을 분배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진 것이다. 플라톤은 응분의 몫을 신분과 출생에 따른 역할로 파악하였다. 이에 부합한 역할 수행을 옳은 것으로 판단한 그는 통치계급, 군인계급, 생산계급이 지혜, 용기, 절제의 덕을 가지고, 고유 역할에 주력함으로써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롭다고 보았다.⁵⁾ 중용의 덕을 강조한

3) 영은 1958년 발표된 그의 소설 『능력주의의 부상』(The Rise of the Meritocracy)에서 능력주의가 가진 양면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능력주의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원리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그로 인한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Young, Michael,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능력주의』 (서울: 이매진, 2004), 14.

4) Sandel,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56.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과도와 부족 사이의 적절한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신분과 출생에 관한 플라톤의 설명의 배후에 가치(axia)에 대한 인정이 위치하고 있다고 본 그는 응분의 몫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⁶⁾ 가치는 기여와 업적에 따라 평가된다. 이 기여와 업적은 각자의 능력에 기초하고, 비례한다. 이와 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의 영향으로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응분의 몫의 분배가 정의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공고화되었다.

이러한 응분 원칙에 기초한 정의관은 기회 균등 원칙에 중점을 둔 정의관과 연결되었다. 기회 균등은 특정 자격, 지위, 재화의 획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한다.⁷⁾ 기회 균등의 실현은 공정한 절차를 전제하고 있다. 누구나 진입과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경쟁을 통해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고, 보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기준은 요구되는 특정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이다. 능력만을 감안하여 선택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경쟁의 과정은 공정하고, 정의롭다. 이러한 능력주의의 구조 안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도 확보된다.

능력주의는 정의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해 속에 높은 위상과 의미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깊이 침윤되었고, 다양한 영역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해석학적 틀이 되었다. 능력주의는 사회적 유동성을 증진하는 정의로운 원리로 이해되지만,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능력의 배경적 요인을 간과하고, 결과만을 감안하여 분배하는 데 있다. 능력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Plato, *Politeia*, 박종현 역, 『국가』 (서울: 서광사, 2001), 285-286.

6)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8), 169.

7) Rawls, John,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14), 93.

존 롤스(John Rawls)가 이 문제를 간파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칸트의 사상적 노선을 따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했지만 개인들의 협동 체계인 사회가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기 위해 평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정의의 틀 안에서 평등은 기회 균등 원칙을 통해 구현된다.⁸⁾ 그러나 이 원칙은 형식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능력 형성에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작용한다. 재능과 같은 자연적 우연성뿐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같은 사회적 우연성에 의해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⁹⁾ 그래서 개인은 불평등한 출발선에 서서 경쟁에 임하게 되고, 불평등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정한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롤스는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연성의 특혜를 많이 보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그 대신 혜택을 적게 보고 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주어지는 조치가 더 적합하다. 이러한 차등 원칙의 적용을 통해 공정한 기회 균등이 이뤄지고, 최소 수혜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¹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사회가 안정화되면 이미 우연성의 특혜를 보고 있던 개인들도 이로 인한 유무형의 혜택을 공유하게 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가 상호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차등 원칙의 적용을 통해 박애의 가치가 실현되고, 최소 수혜자가 자존감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¹¹⁾

8) 위의 책, 81.

9) 위의 책, 92-93.

10) 위의 책, 122.

11) 위의 책, 126-128.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도 능력주의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였다. 그는 평등지향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한 롤스와 달리 시민의 덕과 자치를 중시하는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공동체와 공동선의 의미를 부각하였다. 샌델은 능력주의가 공동체성을 약화하는 부정적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²⁾ 능력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승자와 패자가 얻은 보상의 차이는 능력 차이에 따른 정당한 결과이다. 보상은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능력 부족에 대한 패자의 자책은 굴욕감과 결합되고, 승자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¹³⁾ 반대로 승자는 자신의 업적을 능력과 결부함으로써 오만해지며, 패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상실하게 된다.¹⁴⁾ 그 결과 사회적 연대가 약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샌델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해석이 우연성의 영향을 외면한 결과라고 보았다. 그래서 경쟁 이전에 작용하는 우연성의 효과를 경계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게 된 행운과 은총에 해당한다.¹⁵⁾ 패자는 이 인식을 통해 그가 획득한 적은 보상이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며, 굴욕감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승자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덕을 가지고, 자신이 얻은 혜택을 공동체적으로 향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샌델은 이와 같은 인식 변화와 함께 보상이 적은 노동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¹⁶⁾ 노동의

12) Sandel,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67.

13) 위의 책, 52.

14) 위의 책, 53.

15) 위의 책, 67.

존엄성 회복은 사회 구성원의 공헌이 동등하게 인정받는 기여적 정의의 구현을 가져오며, 공동체성을 증진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전제 위에서 비로소 공화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롤스와 샌델은 상이한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능력주의가 능력의 배경적 요인을 간과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배경은 승자의 독식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부모의 경제력과 같은 물질적 특혜를 통해 자격, 지위, 재화의 획득이 유리해지고, 승자의 입지가 대를 이어 공고화된다.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같은 비물질적 특혜의 상속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능력의 형성을 가져온다.¹⁷⁾ 이와 반대로 사회적 배경의 결핍은 능력 부족을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그래서 능력의 배경적 요인을 외면하는 능력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더 나아가 이를 촉진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배경의 특혜를 보고 있는 개인의 이익을 제한하는 시도는 롤스의 지적처럼 그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에게 차등의 이익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 성사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법이 유의미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는 법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함축하고 있는 후버의 법이해를 통해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에 관한 법의 기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6) 위의 책, 322-329.

17) McNamee, Stephen and Miller Jr., Robert,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역,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사이, 2021), 27-29.

III. 능력주의와 법

1. 법의 목적과 기능

법은 다층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법은 다양한 개념 규정을 가지고 있다.¹⁸⁾ 후버는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생각에 기초하여 법을 이해하였다. 칸트는 인간이 감정과 경향성을 따르는 자의(Willkür)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¹⁹⁾ 그러나 인간은 선의지를 통해 자의에 좌우되지 않고, 실천 이성의 도움을 받아 보편적 법칙에 부합하는 준칙을 설정하며 옳은 행위를 추구할 수 있다. 자의에 따른 해악 행위를 양산하지 않고, 도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자의의 극복을 의도하는 도덕과 달리 법은 타율적으로 자의를 제한하는 강제 규범이다.²⁰⁾ 법칙을 제공하고, 그에 합치하는 외적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자의의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병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외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는 형식적 규범에 해당한다. 후버는 칸트의 이해를 기초로 법을 인간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강제 규범의 총체로 파악하였다.²¹⁾ 그러나 그는 자의의 제한이 의도하는 바가 타자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해석을 통해 후버는 법이 자유의 구현을 의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자유는 사회 구성원이

18) Huber, Wolfgang,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3), 127.

19) Kant, Immanuel, *Die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Suhrkamp, 1982), 318.

20) 위의 책, 337.

21)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65.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법은 자유와 함께 더 나아가 평등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인정을 현실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후버의 생각은 칸트의 존중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칸트에게 인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성을 기초로 자의를 극복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이다. 그래서 함부로 평가, 대체, 교환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존엄하다.²²⁾ 이로부터 타자에 의해 도구화될 수 없고,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도출된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타자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타자 또한 존엄하기 때문에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는 “모든 인간은 자기 이웃에게 존중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도 상호적으로 자기 이웃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²³⁾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서 상호 존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버는 존중의 요구가 인정의 요구와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²⁴⁾ 이에 따라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존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타자 또한 존엄하기 때문에 존중과 인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호 인정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을 기점으로 타자와 왜곡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성사되기 어렵다. 그래서 후버는 상호성의 실현이 법적 차원에서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의 근본 목적은 상호 인정의 관계를 구현하는 것이다.

22) Kant, Immanuel, *Die Metaphysik der Sitten*, 600.

23) 위의 책, 600.

24)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Studien zur Ethik der Verantwortung* (München: Chr. Kaiser, 1990), 248.

“법의 목표는 상호 인정의 실현이다. 인간이 상호적으로 인정을 구현할 때 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법은 틀을 제공하고, 상호 인정이 구체화되는 생활 관계를 보호한다. 법은 협력과 상호 호혜를 가능하게 하는 규칙들과 의무들의 결합체이다. 법은 인정을 위한 조건들이 침해될 경우 국가적 강제력을 집행한다. 생명, 존엄, 소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적 제재의 실행을 가져오는 권리 손상에 해당한다.”²⁵⁾

이처럼 후버는 법이 상호 인정을 현실화하는 규범 체계라고 판단하였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한 상호성의 존중이 법의 도움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법률은 직간접적으로 상호 인정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다. 후버는 이 생각이 문화인류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근거를 제공한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Wolfhart Pannenberg)는 법이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였다.²⁶⁾ 가족과 그 연합체인 씨족에서 통용되는 다양한 행동 양식과 기준이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법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인류가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절부터 이뤄진 주고받는 행위는 상호성의 구현에 해당한다.²⁷⁾ 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되었고, 인간의 관습에 깊이 자리 잡았다. 관습에 기초를 두고 있는 법은 제도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상호 인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또한 후버는 상호성의 실현이 현대 사회의 법체계 안에서도 유효한 목표라는 점을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철학을 통해 논증하였다.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구조를 현상학적 차원에서 이층위적으로 이해하였다.²⁸⁾ 경제와 행정 영역과 같은 기능적 지평인 체계(System)는 사

25)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64.

26) Pannenberg, Wolfhart, *Anthropologie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452.

27) 위의 책, 452.

회의 분화 과정에서 시장과 권력의 가치 상승을 통해 높은 위상과 의미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체계는 가족과 친구 관계와 같은 비기능적 지평을 의미하는 생활세계(Lebenswelt)에 침투하여 이를 식민지화하였다. 체계 안에서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삼는 전략적 행위가 힘을 발휘하고, 생활 세계 안에서는 인정과 교류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영향을 미친다. 법은 이 두 영역의 사회적 행위를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체계와 생활세계에 속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인정을 증진하는 것이다.²⁹⁾ 법은 두 영역을 매개함으로써 생활세계가 고유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안들이 법률화되어 체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생활세계에 대한 간섭과 개입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후버는 성서의 법이해가 상호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대 사회의 법은 종교, 도덕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었다. 구약 시대의 법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윤리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³⁰⁾ 이 계약을 기초로 해방 사건의 주체인 하나님의 윤리적 요구가 법의 형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이 내용이 담긴 계약 법전에 포함되어 있는 황금률은 상호성의 원칙을 함축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출 21:23-25)로 정식화되는 황금률은 행위에 대한 균등한 대응을 보장함으로써 해악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기 행동과 동일한 행동이 타자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여 해악 행위를 삼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금률은 소극적 차원의 상호성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

28)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 M.: Suhrkamp, 1981), 180.

29) Habermas, Jürgen,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1994), 49-50.

30)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238.

다.³¹⁾ 이처럼 상호 인정의 증진은 성서 안에서도 중요한 법적 요구로 이해되었다.

문화인류학적, 철학적, 성서적 근거를 바탕으로 후버는 법이 상호 인정의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은 상호성을 증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은 상호 인정 관계의 형성을 위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법은 완전하거나 종결된 체계가 아닌 불완전하고, 개방적인 체계인 것이다. 후버는 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회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가 준거점으로 삼은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검토하려고 한다.

2.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

법은 개신교 전통 안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주제이다. 여기에 교회와 정치 권력의 역할을 구분하고, 강조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³²⁾ 그의 영향 속에서 평화와 질서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과 그 도구인 법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존립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그래서 법은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세속적 영역에 속한다고 이해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19세기에도 유지되었다. 당시 독일을 대표하던 법학자 루돌프 쾨(Rudolph Sohm)도 이

31) 황금률은 이와 함께 적극적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할 것(마 7:12)을 요구하는 황금률은 타자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것에 더하여 그에 대한 존중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해악 금지와 존중에 대한 요구는 상호성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252. 황금률의 윤리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조용훈,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 실천』 63(2019), 655-676.

32) Luther, Martin, “Von weltlicher Obrigkeit, wie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 in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Bd. 4* (Frankfurt a. M.: Insel Verlag, 1982), 36-84.

흐름 속에서 법의 본질은 세속적이고, 교회의 본질은 영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³³⁾ 법은 강제력을 통해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세속적 체계이고, 교회는 사랑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영적 공동체이다. 강제력의 실행을 요체로 삼고 있는 법은 자발적 사랑의 실천을 중시하는 교회에게 낯선 영역인 것이다. 쾰머의 생각은 20세기 초반 개신교 전통의 법이해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법은 신학적 주제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나치 정권에 의해 법이 전체주의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법에 대한 신학적 접근이 제한적으로 시도되었다.³⁴⁾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시금 법은 세속 영역에 속한다는 인식 속에 깊이 주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달리 후버는 1970년대부터 법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법이 기독교 신앙의 영향력 증대와 사회 병리 현상의 극복을 돕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³⁵⁾ 루터의 전통에서 있는 신학자로서 그는 법을 신학적으로 논증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 대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의 목적과 기능을 파악하고, 그 개선과 발전을 위한 교회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법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그의 우선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후버는 먼저 판넨베르크의 법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33) Sohm, Rudolph, *Kirchenrecht. Bd. 1. Die geschichtlichen Grundlagen* (Berlin: Duncker & Humblot, 1970), 1.

34)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에밀 브룬너(Emil Brunner)와 함께 당시 법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시도한 대표적인 신학자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법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9-35.

35) 후버는 법이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함축하고 있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공적 책임의 방향을 제시하는 공적 신학(öffentliche Theologie)과 법윤리를 연계하여 논의하였다.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12.

판넨베르크의 신학은 역사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³⁶⁾ 하나님은 역사를 규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 그래서 역사는 기독교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 역사의 의미도 종말 사건을 통해서만 완전히 파악될 수 있다. 하지만 종말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간접적으로 계시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종말의 선취에 해당한다.³⁷⁾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계시는 보편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³⁸⁾ 이에 따라 기독교적인 것은 보편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장 선상에서 기독교 신앙은 법과 상응 관계를 형성한다. 법과 유사하게 기독교 신앙은 상호성의 원칙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³⁹⁾ 타자에 대한 인정과 행동을 추동하는 사랑이 상호 호혜적 관계의 형성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법에 상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실천은 상호성의 실현에 기여하고, “법(률)적 관계들을 생기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⁴⁰⁾ 기독교 신앙은 법과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법의 안정화에 공헌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후버는 판넨베르크의 구상이 법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을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⁴¹⁾ 이로 인해 기독교 신앙이 지니고 있는 세속 영역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두 영역의 상응점과 함께 차이점이 명료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과 기독교 신앙은

36) Huber, Wolfgang, “Heilsgeschehen und Weltgeschichte - Grundfragen der Ethik im Anschluss an Wolfhart Pannenberg,” *ZEE* 64(2020), 250-252.

37) Pannenberg, Wolfhart, “Dogmatische Thesen zur Lehre von der Offenbarung,” in *Offenbarung als 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103.

38) 위의 책, 98.

39) Pannenberg, Wolfhart, “Christliche Rechtsbegündung,” in *Handbuch der christlichen Ethik. Bd. 2* (Freiburg: Herder, 1978), 336.

40) Pannenberg, Wolfhart,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오성현 역, 『윤리학의 기초 - 철학적, 신학적 관점』 (서울: 종문화사, 2022), 179.

41)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249.

연대적 행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법이 추구하고 있는 상호성의 원칙은 연대의 가치를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⁴²⁾ 법은 타자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자의의 제한을 통해 비연대적 행위를 억제하고,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연대적 행위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법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사랑도 근본적으로 연대성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실천은 연대성의 증진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법의 역할 수행에 기여하게 된다.⁴³⁾

법과 기독교 신앙의 상응점과 함께 후버는 두 영역의 차이점을 부각하였다. 법이 제도화된 강제 규범으로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사랑은 자발적 경향성으로서 일시적인 실행을 가져온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법은 상호성을 기초로 삼고 있지만, 사랑은 일방성을 토대로 하고 있다.⁴⁴⁾ 자기 행위에 상응하는 타자의 행동에 대한 기대 없이 타자 지향적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은 원수 사랑의 요구에서 잘 드러난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 인정을 상회하는 질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법에 비해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⁴⁵⁾

후버는 이 차이점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앙이 법에 대해 건설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독교 신앙은 법과 간격을 유지하며 그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법이 상호성의 원칙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법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버는 인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국가 이전의 규범이라는 근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인권은 근대 이후로 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다.⁴⁶⁾ 인권은 세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과 상응점을

42) 위의 책, 246.

43)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67.

44) 위의 책, 253.

45)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244.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판단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⁴⁷⁾ 교회는 인권을 기준으로 법이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게 상호성을 증진하고 있는지 관찰하고, 미흡할 경우 비판을 통해 법의 개선을 추구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주의는 배경의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방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상호 인정의 실현을 위협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인권을 바탕으로 법의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에 주력해야 한다. 그 과제를 후버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제시한 대안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IV. 능력주의와 법윤리적 과제

후버는 능력주의를 직접적으로 주제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구상한 대안은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방향 설정을 도와준다. 사회적 불평등을 빈곤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병리 현상이라 진단한 후버는 실질적 기회 균등의 실현이 그 근원적 해결책이라 보았다.⁴⁸⁾ 이를 위해 교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가난한 자에 대한 구약성서의 하나님과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속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였다.⁴⁹⁾ 이에 따라 후버는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vorrangige Option für die Armen)의 원칙을 강조하였다.⁵⁰⁾ 이 원칙

46)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284.

47) 후버는 기독교 신앙이 법과 마찬가지로 인권과의 관계에서도 상응점과 함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특히 자유, 평등, 참여에 대한 이해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위의 책, 297-298. 후버의 인권 이해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 볼프강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99-221.

48) Huber, Wolfgang, *Ethik. Die Grundfragen unseres Lebens von der Geburt bis zum Tod* (München: C. H. Beck, 2015), 87.

49)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231.

50) 이 원칙의 법윤리적 적용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성수, “민주주의와 교회의

을 통해 그는 부유층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빈곤층의 삶의 개선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 빈곤층의 역량 강화는 그가 주목한 핵심 과제였다.⁵¹⁾ 역량 증진은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증진할 뿐 아니라 경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게 한다. 다시 말해 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후버는 이를 위해 교육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취약한 시작 조건이 극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²⁾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경쟁에 임할 수 있다. 후버는 교육을 통한 역량 증진이 성서의 인식과도 조화를 이룬다고 판단하였다.⁵³⁾ 특히 달란트 비유(마 25:14-30)는 각자에게 재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아 주인의 비판을 들은 한 달란트 가진 사람과 달리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을 활용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인의 칭찬을 들은 점에 착안하여 그 발휘를 위한 재능 계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능을 강화하고, 역량 증진을 돕는 교육은 성서 안에서도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후버는 교육의 보장을 위해 발전권⁵⁴⁾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인

공적 책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앙고백서의 법윤리적 조명,” 『신학사상』 196(2022), 364.

51) 후버의 생각은 역량 강화를 통한 선택의 자유와 실질적 기회 균등의 증진을 강조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다. Huber, Wolfgang, *Ethik*, 83.

52) 위의 책, 87.

53) 위의 책, 85-86.

54) 발전권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형민, “발전과 인권 - 제3세대의 인권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1996), 203-234.

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부터의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둔 자유권과 개인의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사회권으로 범주화되었다. 자유권과 사회권은 공통적으로 국가 이전의 규범이라는 근본 특징을 가지고,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⁵⁵⁾ 1960년대 후반부터 제3세계 국가들은 불균형한 세계 경제 질서의 개선, 평화 구축, 환경 보호를 위한 전지구적 연대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인권 담론과 연결됨으로써 연대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연대권의 한 종류인 발전권은 경제 개발을 요구하고,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었다.⁵⁶⁾ 후버는 이 권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 발전권이 추구하는 경제 개발이 국가적 목표 혹은 집단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을 권리 주체로 삼고 있는 인권 개념과 궤를 달리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⁵⁷⁾ 그러나 1986년 공표된 유엔 발전권 선언을 시작으로 점차 발전권은 경제 개발과 관련된 집단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의 발전을 요구하고, 향유하는 개인적 차원의 권리로 자리 잡았다.⁵⁸⁾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양, 의료 등 삶의 기본 조건의 증진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권리로 발전권을 이해한 후버는 이것이 교육의 보장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고 보았다.⁵⁹⁾

후버의 구상은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에 필요한 과제의 윤곽을 설명해 준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능력주의는 능력의 배경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한다. 특히 사회적 배경의 결핍에 의해 부족한

55) Huber, Wolfgang und 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Stuttgart: Kohlhammer, 1990), 344.

56) 백범석, 박진아,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 - 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157(2020), 65.

57) Huber, Wolfgang und 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344.

58) Lienemann, Wolfgang, “Menschenrechte und das Recht auf Entwicklung,” *ZEE* 53(2009), 91.

59) Huber, Wolfgang, *Ethik*, 234.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상황이 방지된다. 이에 따라 후버의 주장처럼 교육의 증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기회 균등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배경의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현실화를 위해 법의 역할이 필요하다. 법은 발전권의 보장을 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구체화할 수 있다. 교회는 달란트 비유가 암시하고 있듯이 교육의 증진을 책임적 과제로 이해하고, 발전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언어와 지능 발달이 이뤄지는 유아 교육의 확대와 강화, 초중고 수업의 질 향상, 직업 교육의 다양화와 심층화가 법을 통해 구현되는 것을 긴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⁶⁰⁾ 또한 비물질적 형태의 사회적 배경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습득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구성도 교회의 법윤리적 관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능력에 따른 분배를 강조하는 능력주의는 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이해되며,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렸다. 그러나 이것은 능력 형성에 미치는 배경적 요인의 영향을 간과하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배경의 결핍이 가져온 능력 부족으로 경쟁에서 이탈되는 상황이 방지되며, 사회적 불평등이 공고화된다. 그 극복을 위해 공정한 경쟁이 성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이에 기여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후버의 구상은 이러한 법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데 공헌한다. 그는 문화

60)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zur Armut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61-69.

인류학적, 철학적, 성서적 탐구를 통해 법이 상호 인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고, 그 증진을 위해 법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기독교 신앙이 법과 상응점뿐 아니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하고, 필요한 것이다. 이때 인권은 법에 대한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인권은 세속적 이념이지만, 기독교 신앙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판단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교회는 인권을 기준으로 법에 의해 상호성의 증진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찰하고, 교정이 필요할 경우 비판을 통해 법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경의 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을 공고화하여 상호 인정의 실현을 위협하는 능력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의 법윤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의 구체적 방향은 후버가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제시한 대안적 관점을 통해 정교화된다.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실질적 기회 균등을 증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그의 생각은 사회적 배경의 결핍으로 경쟁에서 이탈하게 되는 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보장을 통해 능력 형성이 증진되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버가 강조한 발전권의 보장이 교회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후버의 기획을 토대로 능력주의의 문제 극복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그 현실화를 위해 발전권의 법적 보장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공론장 참여와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회의 법윤리적 관심과 노력은 능력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 현존 사회를 개선하는 데 공헌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회의 책임 - 불프강 후버의 정의로운 평화의 윤리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44(2019), 199-221.
- _____.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민적 용기의 개념과 범윤리적 함의.”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9-35.
- _____. “민주주의와 교회의 공적 책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앙고백서의 범윤리적 조명.” 『신학사상』 196(2022), 347-370.
- 김형민. “발전과 인권 - 제3세대의 인권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3(1996), 203-234.
- 백범석, 박진아. “발전, 인권 그리고 국제법 - 발전권의 국제적 논의 전개와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157(2020), 59-92.
- 조용훈.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본 황금률 윤리.” 『신학과 실천』 63(2019), 655-676.
-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이창우, 김재홍, 강상진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8.
- Fishkin, Joseph.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유강은 역. 『병목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2016.
- McNamee, Stephen, Miller Jr. Robert. *The Meritocracy myth*. 김현정 역. 『능력주의는 허구다』. 서울: 사이, 2021.
- Pannenberg, Wolfhart. *Grundlagen der Ethik. Philosophisch-theologische Perspektiven*. 오성현 역. 『윤리학의 기초 - 철학적, 신학적 관점』. 서울: 종문회사, 2022.
- Plato. *Politeia*. 박종현 역. 『국가』. 서울: 서광사, 2001.
- Sandel, Michael. *The Tyranny of Merit*. 함규진 역. 『공정하다는 착각』. 서울: 와이즈베리, 2020.
- Young, Michael.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유강은 역. 『능력주의』. 서울: 이매진, 2004.
-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Gerechte Teilhabe. Befähigung zu Eigenverantwortung und Solidarität. Eine Denkschrift des Rates der*

- Evangelischen Kirche in Deutschland zur Armut in Deutschland.*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Habermas, Jürgen.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 a. M.: Suhrkamp, 1981.
- _____.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s Rechts und des demokratischen Rechtsstaats.* Frankfurt a. M.: Suhrkamp, 1994.
- Huber, Wolfgang. *Konflikt und Konsens. Studien zur Ethik der Verantwortung.* München: Chr. Kaiser, 1990.
- _____.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_____. "Rechtsethik." In *Handbuch der evangelischen Ethik.* München: C. H. Beck, 2013, 125-193.
- _____. *Ethik. Die Grundfragen unseres Lebens von der Geburt bis zum Tod.* München: C. H. Beck, 2015.
- _____. "Heilsgeschehen und Weltgeschichte - Grundfragen der Ethik im Anschluss an Wolfhart Pannenberg."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64(2020), 250-262.
- _____. Tödt, Heinz Eduard. *Menschenrechte. Perspektiven einer menschlichen Welt.* München: Kreuz Verlag, 1977.
- _____. Reuter, Hans-Richard. *Friedensethik.* Stuttgart: Kohlhammer, 1990.
- Kant, Immanuel. *Die Metaphysik der Sitten.* Frankfurt a. M.: Suhrkamp, 1982.
- Lienemann, Wolfgang. "Menschenrechte und das Recht auf Entwicklung." *Zeitschrift für evangelische Ethik.* 53(2009), 89-103.
- Luther, Martin. "Von weltlicher Obrigkeit, wieweit man ihr Gehorsam schuldig sei." In *Martin Luther ausgewählte Schriften. Bd. 4.* Frankfurt a. M.: Insel Verlag, 1982, 36-84.
- Moxter, Michael. "Recht und kommunikative Freiheit. Überlegungen zur Rechtsethik Wolfgang Hubers." In *Kommunikative Freiheit. Interdisziplinäre Diskurse mit Wolfgang Huber.*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4, 109-125.
- Pannenberg, Wolfhart. "Dogmatische Thesen zur Lehre von der Offenbarung." In *Offenbarung als Geschicht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1, 91-114.

_____. "Christliche Rechtsbegündung." In *Handbuch der christlichen Ethik. Bd. 2*. Freiburg: Herder, 1978, 323-338.

_____. *Anthropologie in theologischer Perspektive*.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Rawls, John, *Eine Theorie der Gerechtigkeit*. Frankfurt a. M.: Suhrkamp, 2014.

Sohm, Rudolph. *Kirchenrecht. Bd. 1. Die geschichtlichen Grundlagen*. Berlin: Duncker & Humblot, 1970.

논문투고일: 2022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22년 07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8월 15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능력주의의 문제를 명료화하고, 그 극복을 위한 방안을 불프강 후버의 법윤리를 기초로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능력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 사고 체계인 능력주의는 능력 형성에 미치는 배경적 요인을 간과하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리한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균등이 필요하다. 법은 그 구체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이다. 후버는 법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가 실질적 기회 균등을 증진한다는 점을 밝혔다. 후버의 생각에 기초하여 교회는 발전권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법윤리적 노력은 능력주의의 극복과 사회의 개선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불프강 후버, 법윤리, 능력주의, 정의, 사회윤리, 발전권
